

# **대학원 생명과학과 운영 내규**

## **제1장 총칙**

**제1조 (목적)**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의생명시스템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**제2조 (전공분야)** 의생명시스템학과는 세계수준의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개의 전공 (융합의생명과학 전공, 융합바이오소재 전공)을 개설한다. 세부전공의 폐지 및 신설은 대학원 의생명시스템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**제3조 (적용범위와 효력)**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의생명시스템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**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**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

## **제2장 입학관리**

**제4조 (우수학생의 유치)** 의생명시스템학과 소속 교수들은 의생명시스템학과 석·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.

## **제3장 교육과정 및 교 · 강사 배정**

### **제5조 (교육과정)**

**제6조 (과목개설)** 의생명시스템학과의 과목개설은 의생명시스템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학칙에 따라 개설한다.

**제7조 (교 · 강사 배정)** 의생명시스템학과 강사 배정은 의생명시스템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학칙에 따라 개설한다.

## **제4장 논문지도**

**제8조 (지도교수의 선정)** 의생명시스템학과 대학원생의 지도교수 선정은 3학기 시작 전후로 선정한다. 입학 시 지도교수가 사전협의 되지 않은 경우, 학과운영위원회를 통해 2학기 동안 임시 지도교수를 배정한다.

## 제5장 자격시험

**제9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** 의생명시스템학과 대학원생의 종합학력시험의 면제기준은 대학원 학칙을 포함,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.

- 가. 석사학위의 경우, 1편 이상의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accepted 시 면제됨 (리뷰 가능 및 공동 포함 제1저자만 인정).
- 나. 박사학위의 경우, 2편 이상의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 (accepted 포함) 또는 IF 10 이상 1편 이상 (2편 중 한편은 리뷰 논문 가능, 단, 공동 포함 제1저자만 인정)  
※ 해당 증빙자료(별쇄본, 게재증명서, 게재예정증명서 등)는 종합학력시험 신청 기간 제출

**제10조 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** 석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, 박사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이다.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한다.

※ 지도교수의 과목을 2개 이상 선택 할 수 없음.

**제11조 (외국어시험 과목)** 의생명시스템학과 대학원생의 외국어 시험 과목에 대한 규정은 대학원 학칙을 포함,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
1. 내국인의 경우 외국어시험 과목은 “영어” 교과목으로 정한다  
( 단, 외국인의 경우 시험 과목은 “영어”, “한국어”로 정한다 )

## 제6장 학위과정

**제12조 (학점 이수) 의생명시스템학과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 및 재학 관련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의거한다.**

- 가. 대학원 학칙 제 23조에 준하여 석사과정 이수학점은 33학점 이상 (연구지도 9학점 포함),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학점은 78학점 이상 (연구지도 18학점 포함), 박사과정 이수 학점은 45학점 이상 (연구지도

9학점 포함)으로 한다.

나. 학부 - 대학원 연계 과정을 통해 진학한 경우 취득 해야 할 학점은 석사과정은 30학점 이상 (연구지도 9학점 포함), 석박사 통합과정 75학점 이상 (연구지도 18학점 포함)으로 할 수 있다.

**제 13조 (석사 학위 과정의 변경)** 의생명시스템학과의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단,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이 가능하다.

**제 14조 (석박사통합과정의 지속)**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 수료 후 박사과정의 지속 여부를 심사한다. 심사 결과에 따라 박사과정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는 석사과정 졸업요건에 의거하여 졸업할 수 있다.

**제 15조 (학위 논문 제출 자격 및 논문 지도)** 석박사 학위 논문에 관한 제반 내용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7장, 제 8장에 의거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항목	석사	박사	비고
이수학점	33학점	박사 45학점/통합 78학점	
논문심사 요건	- 신청시기: 졸업 예상일로부터 약 한 학기 전 (매년 3월, 9월)	- 신청시기: 졸업 예상일로부터 약 1년 전 (매년 3월, 9월) - 예심+본심 (1차, 2차 실시) - 영어논문작성	반드시 학위 논문 제출 후 심사 통과 해야 함
역량요건		- SCI (SCIE) 급 주저자 논문의 IF 합 10 이상이어야 함. - 분야별 상위 10% 1편 또는 IF 5이상 1편의 주저자 논문이 포함되어야 함(공동 제 1저자 인정) - 국제 학술대회 영어 발표 1건	모두 충족해야 하며,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	- 종합학력시험 (본교실시)	- 종합학력시험 (본교실시)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SCI(E) 급 논문 accept (주저자)에 한해 면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SCI(E) 급 논문 IF 10점 이상 accept (주저자)에 한해 면제</li> </ul>	
외국어시험 (본교실시)			

##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**제13조 (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)** 의생명시스템학과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에 대한 규정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.

**제14조 (예비발표)** 의생명시스템학과 논문 예비발표에 대한 규정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.

**제15조 (논문심사위원)** 의생명시스템학과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인원에 대한 규정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.

**제16조 (논문대체 심사절차)** 연구논문(논문대체) 심사는 학위논문과 동일한 규정으로 진행한다. 단, 석사 학위에만 해당 되며, 내부 전임교원 2인(지도교수 + 교내 전공 교수)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.

**제17조 (논문대체 제출)** 연구보고서(논문대체) 심사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제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해당 논문의 제본분과 국문 파일을 과사무실로 제출한다.

##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

**제18조 (의사결정 방식)** 의생명시스템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.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/2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 교수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원칙적으로 운영위원장은 대학원 의생명시스템학과 주임교수를 겸임하여 과를 대표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.

제1조 본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정 할 수 있다.

제2조 본 내규는 2026년 3.1. 부터 시행하며, 2025년 입학생도 소급

적용된다.